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 | |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| 월별 | 보수월액(| 고지금액) | 소득월액(납부금액)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결글 | 건강보험료① | 장기요양보험료② | 건강보험료③ | 장기요양보험료④ | |
| 01월 | 233,190 | 19,840 | 0 | 0 | |
| 02월 | 233,190 | 19,840 | 0 | 0 | |
| 03월 | 233,190 | 19,840 | 0 | 0 | |
| 04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05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06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07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08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09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10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11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12월 | 240,170 | 20,430 | 0 | 0 | |
| 연말정산 | 67,400 | 5,000 | | | |
| 합계 | 2,928,500 | 248,390 | 0 | 0 | |
| 총합계 | | | | 3,176,890 | |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 | |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| 월별 |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|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01월 | 210,600 | 0 | |
| 02월 | 210,600 | 0 | |
| 03월 | 210,600 | 0 | |
| 04월 | 210,600 | 0 | |
| 05월 | 210,600 | 0 | |
| 06월 | 210,600 | 0 | |
| 07월 | 218,700 | 0 | |
| 08월 | 218,700 | 0 | |
| 09월 | 218,700 | 0 | |
| 10월 | 218,700 | 0 | |
| 11월 | 218,700 | 0 | |
| 12월 | 218,700 | 0 | |
|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| 0 | | |
| 추납보 | 험료 납부금액 | 0 | |
| 실업크i | 0 | | |
| 합계 | 2,575,800 | 0 | |
| | 충합계 | | |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번 | 호 |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 | 자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2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| | 수익자) | |
| | 삼성생명보험 (주) | | 무)엄마맘아 | 이사랑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26 | 5*** | 00006651041 | .010015 | 011107-***** | 손지원 | 82,920 |
| | | | | | | | |
| | 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 | |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 | | | | |
| 보장성 | 202-81-45*** | | 5080742999 | 90000 | 700528-***** | 손병국 | 1,269,840 |
| | | | | | | | |
| | 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 | | 무배당굿앤굿어 (Hi070 |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(Hi070 | | | |
| 보장성 | 102-81-32*** | | L20075598 | 8582 | 070726-***** | 손재원 | 334,680 |
| | 750301-***** | 고주희 | | | | | |
| | 신한생명보험 (주) | | 신한아이사랑보험Premium |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28 | 3*** | 00102966369 | | 070726-***** | 손재원 | 421,200 |
| | | | | | | |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-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반 | [호 |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자 |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| 수익자) | 종피보험자2(| (수익자) | 종피보험자3(| (수익자) | |
| | 신한생명보험 (주) | | 신한아이사랑보험 | 험Premium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28 | 3*** | 00102966 | 378 | 011107-***** | 손지원 | 347,400 |
| | | | | | | | |
| | 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 | |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| | | | |
| 보장성 | 202-81-45 | 5*** | 119E078799 | 90000 | 700528-***** | 손병국 | 287,480 |
| | | | | | | | |
| | 신한생명보험 (주) | | 참좋은암보험 | 참좋은암보험[갱신형]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28*** | | 00103580354 | | 700528-***** | 손병국 | 453,600 |
| | | | | | | | |
| 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| 3,197,120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손지원 | 011107-***** | |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-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종류 | 류 사업자번호 | |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자 |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3(| 수익자) | |
| | 라이나생명보험 | 험(주) | 무배당우리자녀안심 | ·배당우리자녀안심보험(갱신형)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85 | 5*** | 6231410177 | | 011107-**** | 손지원 | 89,100 |
| | | | | | | | |
| 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| 89,100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재원 | 070726-*****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-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번호 | |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자 |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| 수익자)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3(| 수익자) | |
| | 라이나생명보험 | 험(주) | 무배당우리자녀안심 | l보험(갱신형) | | | |
| 보장성 | 104-81-85 | 5*** | 6231410178 | | 070726-**** | 손재원 | 106,920 |
| | | | | | | | |
| 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| 106,920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-6-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**7-90-70*** | 서****** | 일반 | 500,000 |
| **7-16-57*** | 새**** | 일반 | 60,000 |
| **3-92-00*** | <u>*</u> ***** | 일반 | 150,0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710,00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710,00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권순교 | 410121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**1-05-85*** | 신*** | 일반 | 835,530 |
| **1-82-02*** | <u>o</u> ********* | 일반 | 4,484,760 |
| **1-23-01*** | 0 *** | 일반 | 1,000 |
| **1-90-21*** | 조*** | 일반 | 31,7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5,352,99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5,352,99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지원 | 011107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
| **1-17-40*** | 새*** | 일반 | 9,400 |
| **8-90-06*** | 선**** | 일반 | 363,300 |
| **5-90-68*** | 엔**** | 일반 | 26,200 |
| **1-91-04*** | 정**** | 일반 | 6,400 |
| **6-10-00*** | 물**** | 일반 | 2,600 |
| **2-90-00*** | 본**** | 일반 | 47,760 |
| **0-25-00*** | C ***** | 일반 | 2,4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458,06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458,06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9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재원 | 070726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**1-91-06*** | 웰** | 일반 | 5,900 |
| **1-82-02*** | <u>O</u> ********* | 일반 | 59,08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64,98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64,98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0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손지원 | 011107-**** |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교육비구분 | 학교명 | 사업자번호 | 구분 | 지출금액계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고등학교 | ***고등학교 | **1-83-03*** | 일반교육비 | 1,006,060 |
| 일반교육비 |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| | 1,006,060 | |
| 현장학습비 | 비 합계금액 | | | 0 |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11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손재원 | 070726-**** |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교육비구분 | 학교명 | 사업자번호 | 구분 | 지출금액계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초등학교 | ***초등학교 | **1-83-03*** | 현장체험학습비 | 55,140 |
|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| | | | 0 |
|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| | | | 55,140 |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1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10,416,113 | 0 | 62,800 | 161,040 | 10,639,953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일반 | 6,294,908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대중교통 | 62,800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도서공연등 | 95,310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일반 | 4,120,305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도서공연등 | 65,730 |
| 신용카드 | 101-86-61*** | (주) KB국민카드 | 일반 | 900 |
| 인별합 | 계금액 | 10,639, | | 10,639,953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지원 | 011107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0 | 0 | 5,050 | 0 | 5,050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신용카드 | 101-86-61*** | (주) KB국민카드 | 대중교통 | 5,050 |
| 인별힙 | · ·계금액 | | | 5,050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2,236,370 | 0 | 0 | 20,286 | 2,256,656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109-81-53*** | 코나아이 (주) | 일반 | 1,526,000 |
| 직불카드 등 | 109-81-53*** | 코나아이 (주) | 도서공연등 | 15,536 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*** | (주) KB국민카드 | 일반 | 706,370 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*** | (주) KB국민카드 | 도서공연등 | 4,750 |
| 직불카드 등 | 201-81-68*** | (주)국민은행 | 일반 | 4,000 |
| 인별합 | 계금액 | 2,256, | | 2,256,656 |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권순교 | 410121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5,199,000 | 0 | 0 | 0 | 5,199,000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104-82-07*** | 농업협동조합중앙회 | 일반 | 42,270 |
| 직불카드 등 | 104-86-39*** | 농협은행 주식회사 | 일반 | 5,156,73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5,199,000 |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지원 | 011107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
| 137,590 | 0 | 0 | 0 | 137,590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101-86-61*** | (주) KB국민카드 | 일반 | 137,59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137,590 |

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손병국 | 700528-*****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| 일는 | <u> </u>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7,247, | 380 | 0 | 0 | 0 | 7,247,380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| | 월별 공제대상금액 | | | |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74 53 | 01월 | 02월 | 03월 | 04월 | 고테디사그애 | |
| 구분 | 종류 | 05월 | 06월 | 07월 | 08월 | 공제대상금액 |
| | | 0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 | | 1,215,900 | 694,080 | 29,800 | 29,800 | |
| 현금영수증 | 일반거래 | 29,800 | 65,760 | 29,800 | 29,800 | 7,247,380 |
| | | 1,084,000 | 948,740 | 1,227,000 | 1,862,900 |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퇴직연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|--|
| 손병국 | 700528-**** | |

■ 퇴직연금 납입내역 (단위:원)

| 상호 | 사업자번호 | 당해연도 당해연도 납입액 중 납입금액 인출금액 | | 스나이그애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|
| 계좌번호 | 연금구분 | 납입금액 | 인출금액 | 순납입금액 | |
| (주) 신한은행 | 202-81-02*** | 7 200 000 | 0 | 7,200,000 | |
| 260015131258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| 7,200,000 | 0 | 7,200,000 | |
| 순납입금 | 금액 합계 | 7,200 | | 7,200,000 | |

- 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- 1.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(회사 부담금 제외)
- 2. 공제 대상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
-19-

4.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